

2026. 6. 9.

수 신: 의 장

제 목: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제안합니다.

첨 부: 서명부 및 조례안 각 1부. 끝.

# 의원서명부

종로구의회

성명	서명
이광규	이광규
이륜구	이륜구
여봉무	여봉무
이시훈	이시훈
김하영	김하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 번호	3441
----------	------

제안연월일: 2026. 6. 9.

제안자: 운영위원회위원장

## 1. 개정 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 제10대 의회부터 종로구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0명(비례 1명 감소)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비하고, 의안의 제출·발의 및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조문 표현을 정비함.(안 제14조제3항)
- 나. 의안의 제출·발의 주체, 의원 발의요건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의안 제출 범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 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 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
- 마. 의원정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조항의 제목 및 불필요한 단서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

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임직원의 범위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관계자를 추가하고, 기관 명칭 및 표현을 정비함.(안 제62조)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 제61조, 제64조, 제71조 및 제76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매년”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으로, “의회 정례회의 집회일 및”을 “정례회 집회일과”로, “총 일수”를 “총일수”로,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종로구청장, 상임·특별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상임·특별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3조의 제목 “(상임위원회 설치)”를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5명”을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6조제2항 중 “위원 중”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으로, “대행한다”를 “대리한다”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및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 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사장 및 임원”을 “이사장·임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의 이사장·사무국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회의일 수) ①·② (생략)</p> <p>③ 의장은 <u>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정례회의 집회일 및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포함한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u></p> <p><u>&lt;신 설&gt;</u></p>	<p>제1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회의일 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 정례회 집회일과 ----- 총일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u></p> <p><u>제1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종로구청장, 상임·특별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상임·특별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u></p>
<p>제1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23조(<u>상임위원회 설치</u>)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p>	<p>제22조의2(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p> <p>제23조(<u>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u>) -----</p>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정수에서 원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1. 운영위원회 5명
2. 행정문화위원회 5명
3. 도시복지위원회 5명

제32조(부위원장) ①·② (생략)

③ 상임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략)

제62조(범위) 법 제51조에 따라 의

----- . <단서 삭제>

1. ----- 5명 이내
2. ----- 5명 이내
3. ----- 5명 이내

제32조(부위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 대리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2조(범위) -----

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관계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

-----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및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이사장·임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의 이사장·사무국장